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8,466,800	17,354,004
일반회계	466,296,603	13,988,898
특별회계	112,170,197	3,365,106
공기업특별회계	30,191,258	905,73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104,258	213,1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087,000	692,610
기타특별회계	81,978,939	2,459,3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797,740	653,932
주택사업특별회계	2,680,649	80,41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087,723	92,6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536,000	46,0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967,246	179,01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81,812	149,45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0,887,769	1,226,63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성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18,1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